

수입
인지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증액(감액), 기한연장, 조건변경]

본인확인자	팀원	팀장	부점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20년월일

본인 (채무자)	성명	(인)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소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	성명	(인)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소					

대출일자		계좌번호		현재 약정한도액	
------	--	------	--	----------	--

귀 은행의 본인에 대한 상기 대출금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해당사항만 기재)

제1조 한도증액(감액) · 한도거래기한연장 · 조건변경

한도증액 (감액)	금 원 [증·감액 후 : 금 원]	원	대출 이자율	□ 변동 금리	기본 금리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 () + ()% ☐ ()	
한도거래 기한연장	□ 연장 후 거래기한 : 년 월 일까지					우대 금리	기한연장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 금리	「기본금리-(우대금리()%)」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 연()%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 위의 금리는 제7조의 우대금리 연 ()%가 적 용된 금리입니다.		

구분	현재조건		변경후조건	
	금리재산정주기	매()개월	금리재산정주기	매()개월
조 건 변 경	대출이자율	금리종류 : ☐ 프라임레이트 ☐ MBR(신기준금리) ☐ 내부고시금리 ☐ 금융채 연계 ☐ 변동기준금리 ☐ 고시기준금리 ☐ MOR ☐ 신규취급액기준/신 잔액기준/잔액기준COFIX ☐ 기타	기본 금리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현재 적용금리 ()% ※ 당초 대출거래약정서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우대 금리	조건변경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제7조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이자지급방법	☐ 은행지정 결산일 다음날에 원단위로 지급합니다. ☐ 매월 ()일에 원단위로 지급합니다.	최종 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 됩니다.
	보증인교체· 담보변경·기타			☐ 매월 ()일에 원단위로 지급합니다.

제2조 이자원가의 제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당초 약정에 불구하고 이자원가는 대출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원가된 이자가 한도금액에 도달하여 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또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 미원가 금액의 입금 및 변제 충당

원가된 이자가 한도금액에 도달하여 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가계당좌예금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1162295

E009-234 (210×297) NCR지 (2023. 11. 개정) K49

KB

제4조 사용제한에 관한 특약

① 은행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한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제한을 해소하기로 합니다.	본인 : (서명또는인)
---	--------------

제5조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초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한연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을 위한 경과 기간은 당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제6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 ① 제1조의「금리종류」가 「MOR」 또는 「COFIX」인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이 대출이자율이 적용 및 변경됩니다. 제1조의 대출이자율은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로 대출실행일에 제2항의 사유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제1조의 「MOR」 과 「COFIX」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MOR」 : 「MOR」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재산정주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 「MOR」은 「CD 91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이상인 경우 「MOR」은 금리재산정주기와 동일한 잔존만기를 가진 「AAA 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을 각각 사용합니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MOR」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금융채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증가입니다. 이 「MOR」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91일물 CD 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 입니다.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COFIX」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시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COFIX」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COFIX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됩니다.
1. 대출만료일 이내 :
- 가. 「MOR」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제2항에 의해 정해진 「MOR」과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나. 「COFIX」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COFIX」와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2. 대출만료일 이후 : 기한연장 시점에 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④ 적용이율은 만기 전 기한연장 시(은행 승인일 기준) 연장 전 기한의 만료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장 전 기한의 만료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 적용]. 다만, '만기 후 기한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한도증액 또는 조건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 승인일부터 변경 이율이 적용됩니다.

제7조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 ① 제1조의 대출이자율의 우대금리는 아래의 우대항목 중 선택한 항목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 내에 “√” 표시하시고, 우대항목 및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우 대 항 목		우 대 조 건	우 대 금 리
금리 우대 항목 (I)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를 보유하고, 최근 3개월 이용실적()원 이상	연()%
	☐ 자동이체 실적우대	☐ 당행에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2건 이상 이체 ※ 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익월 실적으로 인정	연()%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우대	☐ 「KB급여이체 신용대출」기본우대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 되거나, 당타행을 통해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체 실적(건별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 ()	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적립식 예금 잔액 ()원 이상 유지실적 확인되는 경우 ☐ ()	연()%
	☐ 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실적 확인되는 경우 ☐ ()	연()%
	☐ 기타(추가약정 등에 따른)우대	☐ ()	연()%
금리 우대 항목 (II)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연()%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I)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만 적용	연()%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II)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로부터 ()일 또는 ()개월까지 적용	연()%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V)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 이후 ()일 또는 ()개월부터 ()일 또는 ()개월까지 적용	연()%
	☐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 우대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따라 우대율 매월 변경 적용	최고 연 0.4%

- ② 금리우대항목(I)에 의한 우대기간은 **대출신규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하며, 이후(기한연장 포함)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조건 이행 시 자동연장** 됩니다. 만약, 매월 상기 금리우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되며, 금리인상 후 상기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가 재적용됩니다. 인상된 금리변동내역은 신청하신 이자통지/금리변경내역 통지 서비스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③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 **우대금리재산정시 아래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항목별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결제계좌가 당행인「KB국민카드」사의 개인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최근 3개월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금리
30만원 이상	연0.10%
60만원 이상	연0.20%
90만원 이상	연0.30%

가.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1일~말일인** 경우에는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나. 실적산정기간 최종월의 익월 5일까지 KB국민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전표(취소전표 포함)가 매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금액(취소금액 포함)은 다음 금리산정기간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금액, 연회비, 제 수수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2. 자동이체 실적우대 : 본인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제외됩니다.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전월말기준**으로 **2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1일~말일인** 경우 **전월말기준 2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적용합니다.

3.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우대

가.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로 급여(연금)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나. 은행에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로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

· 지정(등록)된 급여(연금)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급여(연금)이체일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은행에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다. 「KB급여이체 신용대출」기본 우대의 경우 '가'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4. 예금/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일기준(전자금융의 경우 전일기준 최근 1개월 이내)**으로 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5.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 ~ IV) :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대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우대기간까지 적용합니다.

6.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은행신용등급(이하 '신용등급') 및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우대금리를 변경 적용합니다.

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	우 대 금 리	
	신용등급 1~6등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한도소진율 25%이상 40% 미만	연0.10%	연0.05%
한도소진율 40%이상 50% 미만	연0.20%	연0.10%
한도소진율 50%이상 80% 미만	연0.30%	연0.15%
한도소진율 80%이상	연0.40%	연0.20%

가.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신용대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일부 협약대출 적용제외)

나.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매월 재산정하며, 금리산출기준일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

(“매일 한도소진율(대출사용금액÷대출약정금액)합÷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 일수”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를 산정하여 다음 1개월간 신용등급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한도소진율산정 후 요구불통장에 대한 정정거래 혹은 취소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이미 계산된 한도소진율 및 우대금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가 미수채권, 특수채권등에 편입될 경우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기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 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62295

E009-234 (210×297) NCR지 (2023. 11. 개정) K49



수입
인지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증액(감액), 기한연장, 조건변경]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20 년 의 의

본 인 (채무자)	성명	(인)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소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	성명	(인)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소					

대출일자		계좌번호		현재 약정한도액	
------	--	------	--	----------	--

귀 은행의 본인에 대한 상기 대출금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해당사항만 기재)

제1조 한도증액(감액) · 한도거래기한연장 · 조건변경

한도증액 (감액)	원		증·감액하는 금액 : 금 [증·감액 후 : 금 원]	대출 이자율	변동금리	기본 금리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 () + ()% □ ()	우대 금리	기한연장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 금리	「기본금리-[우대금리()%]」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한도거래 기한연장			□ 연장 후 거래기한 : 년 월 일까지			고정금리	□ 연()%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 위의 금리는 제7조의 우대금리 연 ()%가 적 용된 금리입니다.				

구분	현재조건		변경후조건	
	금리	재산정주기	매()개월	개월
조 건 변 경	대출이자율	금리종류 : ☐ 프라임레이트 ☐ MBR(신기준금리) ☐ 내부고시금리 ☐ 금융채 연계 ☐ 변동기준금리 ☐ 고시기준금리 ☐ MOR ☐ 신규취급액기준/신 잔액기준/잔액기준COFIX ☐ 기타	기본금리	☐ MOR +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 ☐ 신 잔액기준 COFIX + ()% ☐ 잔액기준 COFIX + ()%
		우대금리	조건변경시 적용 우대금리는 연 ()%로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기본금리-[우대금리()%]」로 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지급방법	☐ 은행지정 결산일 다음날에 원단위로 지급합니다. ☐ 매월 ()일에 원단위로 지급합니다.	☐ 매월 ()일에 원단위로 지급합니다.	
보증인교체·담보변경·기타				

제2조 이자원가의 제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당초 약정에 불구하고 이자원가는 대출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원가된 이자가 한도금액에 도달하여 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또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 미원가 금액의 입금 및 변제 총당

원가된 이자가 한도금액에 도달하여 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가계당좌예금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4조 사용제한에 관한 특약

① 은행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한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제한을 해소하기로 합니다.	본인 : (서명또는인)
---	--------------

제5조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초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기한연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을 위한 경과 기간은 당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제6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 ① 제1조의「금리종류」가 「MOR」 또는 「COFIX」인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이 대출이자율이 적용 및 변경됩니다. 제1조의 대출이자율은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로 대출실행일에 제2항의 사유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제1조의 「MOR」 과 「COFIX」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MOR」 : 「MOR」은 고객이 선택한 「금리재산정주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 「MOR」은 「CD 91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이상인 경우 「MOR」은 금리재산정주기와 동일한 잔존만기를 가진 「AAA 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을 각각 사용합니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MOR」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금융채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증가입니다. 이 「MOR」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91일물 CD 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 입니다.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COFIX」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시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COFIX」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COFIX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됩니다.
1. 대출만료일 이내 :
- 가. 「MOR」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제2항에 의해 정해진 「MOR」과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나. 「COFIX」에 연동하는 대출 : 대출실행일부터 매「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COFIX」와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2. 대출만료일 이후 : 기한연장 시점에 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④ 적용이율은 만기 전 기한연장 시(은행 승인일 기준) 연장 전 기한의 만료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장 전 기한의 만료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 적용]. 다만, '만기 후 기한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한도증액 또는 조건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 승인일부터 변경 이율이 적용됩니다.

제7조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① 제1조의 대출이자율의 우대금리는 아래의 우대항목 중 선택한 항목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 “□” 내에 “√” 표시하시고, 우대항목 및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우 대 항 목		우 대 조 건	우 대 금 리
금리 우대 항목 (I)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를 보유하고, 최근 3개월 이용실적()원 이상	연()%
	☐ 자동이체 실적우대	☐ 당행에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2건 이상 이체 ※ 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익월 실적으로 인정	연()%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우대	☐ 「KB급여이체 신용대출」 기본우대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 되거나, 당타행을 통해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체 실적(건별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 ()	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적립식 예금 잔액 ()원 이상 유지실적 확인되는 경우 ☐ ()	연()%
	☐ 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실적 확인되는 경우 ☐ ()	연()%
	☐ 기타(추가약정 등에 따른)우대	☐ ()	연()%
금리 우대 항목 (II)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연()%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I)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만 적용	연()%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II)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로부터 ()일 또는 ()개월까지 적용	연()%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V)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 이후 ()일 또는 ()개월부터 ()일 또는 ()개월까지 적용	연()%
	☐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 우대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따라 우대율 매월 변경 적용	최고 연 0.4%

② 금리우대항목(I)에 의한 우대기간은 **대출신규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하며, 이후(기한연장 포함)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조건 이행 시 자동연장** 됩니다. 만약, 매월 상기 금리우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되며, 금리인상 후 상기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가 재적용됩니다. 인상된 금리변동내역은 신청하신 이자통지/금리변경내역 통지 서비스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③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 **우대금리재산정시 아래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항목별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결제계좌가 당행인「KB국민카드」사의 개인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최근 3개월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금리
30만원 이상	연0.10%
60만원 이상	연0.20%
90만원 이상	연0.30%

가.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1일~말일인** 경우에는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나. 실적산정기간 최종월의 익월 5일까지 KB국민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전표(취소전표 포함)가 매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금액(취소금액 포함)은 다음 금리산정기간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금액, 연회비, 제 수수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2. 자동이체 실적우대 : 본인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제외됩니다.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월말기준**으로 **2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1일~말일인** 경우 **전월말기준 2건이상 자동이체 출금실적**을 적용합니다.

3.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우대

가.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로 급여(연금)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나. 은행에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 계좌로 건별 50만원 이상 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

· 지정(등록)된 급여(연금)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급여(연금)이체일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은행에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다. 「KB급여이체 신용대출」 기본 우대의 경우 '가'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4. 예금/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우대금리재산정시점 **전일기준(전자금융의 경우 전일기준 최근 1개월 이내)**으로 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5.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I ~ IV) :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우대기간까지 적용합니다.

6.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은행신용등급(이하 '신용등급') 및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우대금리를 변경 적용합니다.

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	우 대 금 리	
	신용등급 1~6등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한도소진율 25%이상 40% 미만	연0.10%	연0.05%
한도소진율 40%이상 50% 미만	연0.20%	연0.10%
한도소진율 50%이상 80% 미만	연0.30%	연0.15%
한도소진율 80%이상	연0.40%	연0.20%

가.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신용대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일부 협약대출 적용제외)

나.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매월 재산정하며, 금리산출기준일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

(「매일 한도소진율(대출사용금액÷대출약정금액)합÷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 일수」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를 산정하여 다음 1개월간 신용등급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한도소진율산정 후 요구불통장에 대한 정정거래 혹은 취소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이미 계산된 한도소진율 및 우대금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가 미수채권, 특수채권등에 편입될 경우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기타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 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